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(대체인력 지원금) 안내문

- (지원대상) 우선지원대상기업
- (지원요건) ①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
 - ★ ② 대체인력 채용일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(지원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)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★
- (지원 제외 근로자) ① 최저임금 미만 ② 사업주(법인의 대표자)의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 ③ 외국인 (단, 체류자격이 F-2, F-5, F-6인 외국인과, 26.1.1.이후 새로 고용한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대체 인력인 경우 지원가능), ④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
- (지원기간)
 - ①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하기 전 2개월의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
 - ②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
 - ③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육아휴직 복직자 인수인계기간
- (지원주기)
 - ① 사전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
 - ②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100%*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
 - * '26.1.1.이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
 - ◆ '25.12.31. 이전에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종전 규정 적용.
 - 최초 50% 지원금은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, 나머지 잔여 50% 금액은 출산휴가 끝난 후 출산육아기사용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신청)
 - ③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복직자 인수인계기간
- (신청기한)
 - ①, ②, ③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,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과 복직 후 1개월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.
- (지원 금액)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
 - ◆ 출산휴가, 육아휴직 대체: 월 최대 140만원(30인 미만), 월 최대 130만원(30인 이상)
 - ◆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관계없이 월 최대 120만원
 - * 2026.1.1. 이전 대체인력지원금: 월 최대 120만원
- (지원금 신청방법) 고용24 홈페이지→ 회원가입→ 기업 공인인증로서 로그인→ 기업지원금→ 출산·육아→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(대체인력) 신청

※ 육아휴직지원금 특례, 대체인력 지원금 중복 제한 관련 안내

-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,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을 제한합니다. 육아휴직 일반지원금(월 30만원)만 지원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(특례 대상기간에 해당하나, 일반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면 대체인력지원금 중복 가능)